



산업보건 주요뉴스



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「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」 개정

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9일, 「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을 개정하여 발표했다.

해당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「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개정안 주요 내용

-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종료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,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. 한편,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.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안(2019년 개정)의 취지에 따라,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고,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·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.
-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·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,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하여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·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.

※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「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 개정안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.





산업현장 근로환경,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?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21년 3월까지 제6차 근로환경조사 실시

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1월 5일, 산재 예방 정책 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'제6차 근로환경조사'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해당 조사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, 2006년에 처음 조사를 진행했으며, 2011년 제3차 조사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.

조사 대상은 전국 5만 가구 만 15세 이상 취업자(사업주·자영업자 포함)로, ▲근로자 건강 ▲직업만족도 ▲일과 삶의 균형 ▲근로시간 ▲조직의 의사소통 ▲폭력/차별 ▲직장 내 위험노출정도 등 총 130여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.

조사 방식은 ▲대면 면접조사 ▲인터넷 설문 ▲자기기입방식 등 3가지 형태로 이뤄진다.

대면 면접조사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현장 방문 면접조사로 약 40분간 진행된다. 대면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거나, 종이설문지를 전달받아 작성 후 조사원이 다시 회수해가는 자기기입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.

※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'제6차 근로환경조사 실시' 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.



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'빨간날' 쉰다 -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, 내년부터 30~300인 미만으로 확대

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도 '빨간날'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.

1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. 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,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.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.

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0~300인 미만 사업장 10만 4,000개소를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.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.

※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'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"빨간날" 쉰다' 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.